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시공달 대상 업체

연번	대상업체	영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1	(주)명사기공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가좌동)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3항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2.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16.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청문일시 : 2024. 12. 16.(월) 14:00 ,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도로과 4층

5. 문 의 처 : 서구청 도로과 건설행정팀 (☎ 560-4484)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